製造物責任法 導入의 經濟的 效果와 立法方向

申　光　湜 (本院 研究委員)
具　本　天 (本院 專門研究員)

◇要　　約◇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賠償 및 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消費者 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製造物責任의 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損害賠償額 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Ⅰ. 製造物責任法 導入論議의 背景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地球村 時代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製品安全, 健康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장개방 등으로 소비상품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使用·消費過程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韓國消費者保護院(1993)의 『消費者危害實態 및 安全意識調査』 결과에 따르면, 1991~92년 사이에 조사대상 총 1,477가구 중 186가구(12.6%)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219건 발생하였고 관련상품의 종류도 62개에 이르고 있다. 宋泰會(1995)는 이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제품결함으로 인한 연간 소비자피해의 규모를 1,5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民事責任法制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확대손해)를 입은 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民法 第750條에 의한 불법행위(tort)책임[1]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그러나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이 '過失原則'(negli-

1)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시각으로 환경책임, 제조물책임, 산업재해책임의 기본사상이다. 19세기에는 계약당사자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계약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2) 民法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제조자와 소비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제조자에게 채무불이행

gence rule)에 입각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因果關係, 그리고 제조자의 故意나 過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등 그 立證責任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조자의 안전제고유인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嚴格責任原則'(rule of strict liability)을 채택한 現代的 製造物責任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嚴格責任原則은 제조자의 故意나 過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製品缺陷의 存在 및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因果關係의 입증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 제조물 결함에는 제조결함뿐만 아니라 설계(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도 포함된다. 製造缺陷은 '제품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므로 대량생산된 제품 중 하나가 특별히 결함을 지닐 때를 일컬으며, 設計缺陷은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만큼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제품설계의 편익이 그 위험을 능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제품의 위해속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으면 피해가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되면 警告缺陷이 인정된다. 결국, 엄격책임원칙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責任의 要件을 제조자의 과실로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함으로써 제조자의 자기 제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을 제공하고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확대손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도 불가능하다.

3) 1982년 2월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마련하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康昌景 · 崔秉祿 · 朴熙主(1994), 崔秉祿(1996) 참조.

그 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비용은 보험료, 법정비용, 제품시험·안전관리비용, 제품철회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게 부과되나, 궁극적으로 이 비용들은 가격상승이나 구매선택폭의 감소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本稿는 제조물책임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여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피해보상과 사고감소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엄격책임원칙의 논거를 살펴본 다음, 責任原則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기술하고 있다. 제Ⅲ장은 제조물책임법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제와 그 시행경험을 논의하고 있다. 제Ⅳ장은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Ⅴ장은 Ⅱ~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Ⅱ. 製造物責任의 論據와 經濟分析

1. 製造物責任의 論據

어떤 사회이든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事故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산업·기술이 발달하여 '복잡한' 제품의 생산·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제품사용 및 소비상의 사고발생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불가능하다. 예컨대,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0km로 하면 사망사고를 거의 없앨 수 있겠지만 운전자의 시간기회비용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政策課題로 대두되는바, 정부의 안전규제 및 불법행위법제 등의 제도, 산재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격시스템을 통한 市場의 힘 등이 제품위험의 통제와 사고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1960년대 초부터 不法行爲法制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제품결함에 기인하는 피해의 배상책임을 규율하여 오던 契約(contract)·過失(negligence)法制가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의 不法行爲法制로 대체됨으로써 미국기업들은 제품결함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게 되었다.[4] 유럽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指針(EC Directive)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거의 모든 EC회원국들이 엄격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였다. 일본은 1994년 6월에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확대를 가져온 엄격책임의 불법행위법제는 다음의 두가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事故의 費用을 사고를 초래하는 행위로 內部化함으로써 위험제품의 생산·소비를 줄여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5] 기업이 자기가 제조·판매한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事故의 費用을 부담하도록 하면, 生産·販賣 등의 결정과정에서 이 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제품안전을 제고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사고방지·감소조치를

4) 1916년 Buick사건, 1944년 Escola사건.
5) Smith(1914)는 비용내부화를 논거로 산재보상보험을 정당화하였으며, Prosser(1943)는 비용내부화의 개념을 불법행위법 전반으로 확대적용하였다.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이 사고피해자에 대한 補償保險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은 多數의 消費者들을 상대로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사고의 비용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바, 개별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피해의 비용을 부담하여 사고보상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2. 責任原則의 經濟分析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등의 책임원칙들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적 분석은 제조자가 소비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製品被害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嚴格責任原則이 사고감소 및 억지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조물이 복잡해질수록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제조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위험제품의 생산·판매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칼, 드릴 등과 같이 사용상의 위험이 명백한 제품은 소비자가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제조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製品安全을 달성하도록 하는 責任費用이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책임의 범위와 그 입증이 너무 어려우면 시장에서 판매·소비되는 危害可能製品이 과도하게 많아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제품의 생산·소비가 사회적 적정량보다 줄어들 것이다.

가. 責任原則

責任(liability)은 누가 事故의 費用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통상 세가지 책임부과의 기준이 책임법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6]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원칙을 혼용하고 있고, 순수한 무과실보상체제는 뉴질랜드만이 채택하고 있어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는다.[7]

(1) 過失責任原則

過失原則하에서는 가해자에게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구체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일정 행위에 있어 '상당한 주의'(due care)를 취할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過失이 있다'고 본다.[8] 따라서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이외에 제조자에게 過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제조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자의 過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제품사용·소비과정상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제조자의 過失이 있음을 推定하고 제조자가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여 이 추정을 깨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다.

(2) 嚴格責任原則

嚴格責任原則하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손해발생의 近因이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제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가해자에게 過失이 있음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엄격책임원칙으로의 전환은 제조자의 행동양식과 정보에 관한 복잡한 분석으로부터

6) OECD(1995).

7) 無過失補償體制(no-fault compensation system)는 사회보장이나 의무보험기금 등으로 사고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보완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완전히 대체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1982년 사고보상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른 책임법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무과실보상체제하에서는 단순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바, 이 제도의 장점은 법집행의 비용을 줄이고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8) 법적 의무가 상세히 정의되거나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가 법률적으로 측정되어야만 過失의 개념이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過失原則은 법원이 '상당한 주의'를 평가·결정하는 방법으로부터 실체를 갖게 된다.

좀더 간단하고 객관적인 제품속성의 규명으로 사건분석의 주안점이 바뀌게 되며,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엄격책임원칙은 '상당한 주의'의 수준이 매우 높아 가해자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過失原則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엄격책임원칙하에서 어떠한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絶對責任을 지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은 旣存技術(state of the art) 또는 開發危險(development risk)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오용, 위험감수(assumption of risk) 등을 부분적 또는 완전한 항변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생산자무책임, 과실책임, 엄격책임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생산자무책임(가)은 누구의 주의수준에도 상관없이 상

[그림 1] 過失 및 嚴格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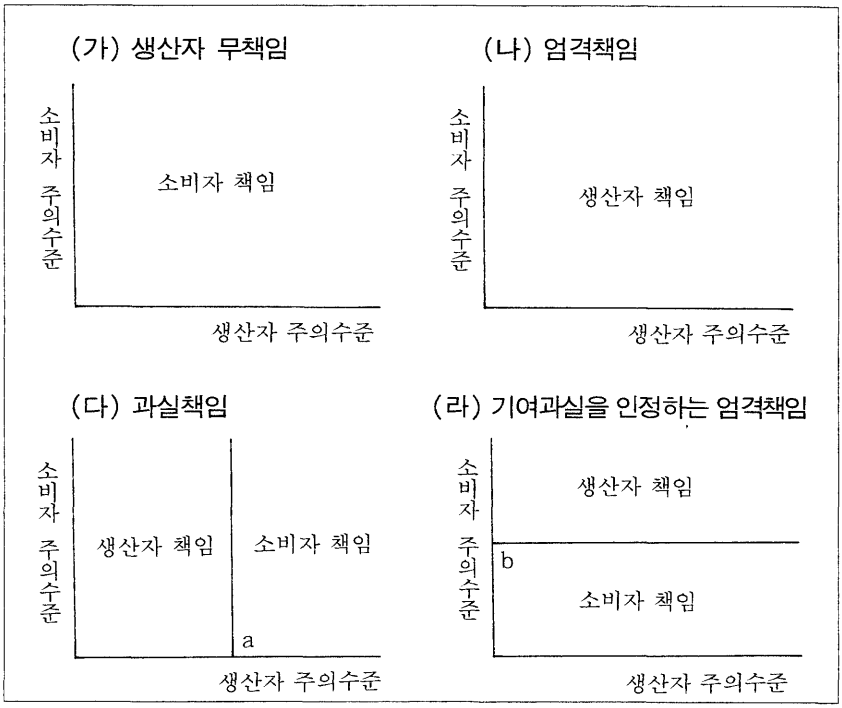

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순수한 엄격책임(나)에서는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과실책임(다)에서는 생산자가 적정수준의 주의(a)를 기울이면 소비자가 책임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며,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라)에서는 소비자가 적정수준의 주의(b)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製造缺陷의 경우에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대개 법원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는 제품을 그 제조자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결함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設計缺陷과 警告缺陷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제품 자체의 검사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판단과 기술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過失 여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나. 經濟分析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 즉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결국 效率과 衡平의 문제로 귀결된다. 흔히 효율과 형평은 상충관계에 있는바, 소득을 아무 제약 없이 재분배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후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배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嚴格責任原則과 過失原則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품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제조자와 소비자이다. 이제 Polinsky(1983)의 간단한 例를 통해 책임원칙들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어떤 음료업자가 음료수를 병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캔에 넣을 것인지를 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병은 값이 싸지만 소비자가 다칠 확률(예상피해액)이 높다. 먼저 소비자가 다칠 확률(예상피해액)은 소비자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각 경우의 비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경우에 따른 費用

(단위 : 원, 하나당)

	생산비용	사고확률	사고시피해액	예상피해액	전체비용
병 사용	40원	1/100,000	10,000	10	50
캔 사용	43원	1/200,000	4,000	2	45

이 경우에는 캔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캔의 사용이 생산비용을 3원 올리긴 하나 예상피해액에서 8원이 싼 셈이므로 전체 생산비용은 결국 캔이 5원 싸다. 생산자들이 43원이 아니라 예상피해액을 합친 45원에 음료수를 판매하므로 (위험한 음료의) 과다한 소비가 방지된다.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알고 있는지(완전정보)와 소비자의 행동이 사고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소비자 행위의 영향)에 대한 가정을 바꿔가면서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1) 消費者의 完全情報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자가 사고의 원인을 떠나서 피해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9] 따라서 기업은 예상피해액을 비용에 포함하여 병을 사용하면 50원, 캔을 사용하면 45원의 비용이 들며 가격도 이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연히 45원짜리 캔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이 값에는 제품가격에 모든 사회적비용이 포함되므로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소비량(캔)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책임은 제조자가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나 생산량에 있어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과실책임은 제조자가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병을 사용하면 가격이 50원이 되지

9) 소비자가 손을 다칠 만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가정했음.

만 캔을 사용하면 가격이 43원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완전정보를 가정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캔의 가격을 계산할 때 자신이 책임질지 모르는 예상피해액 2원을 더하여 45원이 전체가격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캔을 택할 것이며 비록 가격은 43원이지만 2원을 더한 45원의 유효가격에 음료수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과실책임하에서도 주의의 정도나 판매량에서 모두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결국, 제조자와 소비자들이 危險中立的이고 소비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책임원칙이 적용되든 제조자가 기울이는 주의의 수준이나 생산량에서 모두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된다.

(2) 消費者의 不完全情報

소비자가 危險을 과소평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엄격책임에서는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조자는 여전히 병은 50원에 그리고 캔은 45원에 공급하려 한다. 결국 엄격책임의 효율성은 소비자의 정보에 무관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고발생시 완전히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 제품정보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취급하며 제조자는 자신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격에 예상피해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이 대량 소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엄격책임이 효율적이라는 이론적 뒷받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과실책임하에서 기업은 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지기 때문에 병 음료수는 50원에 그리고 캔 음료수는 43원에 판매하려 한다.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캔을 선택하지만 위험을 과소평가하므로 43원에 예상피해액 2원을 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더 많은 캔을 구입하게 된다. 결국 정보

가 불완전하고 소비자가 제품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기울여야 할 주의수준과 소비자의 구입량에 있어 엄격책임만이 효율적이다.

(3) 消費者의 不完全情報 및 事故確率 變化

소비자의 행동이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금까지의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음료수 병이나 캔으로 부상을 입는 것은 구입자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가 주의를 더 기울이면 사고확률을 감소시켜 예상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엄격책임하에서 寄與過失(contributory negligence)의 원칙이 필요하다. 즉 엄격책임에서는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여과실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서 보행자(피해자)가 걷고 있었으면 책임이 없지만 뛰다가 다쳤으면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행자를 걷게 하고 운전자는 천천히 운전케 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 되고 소비자가 알맞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앞의 (1)와 같은 논리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도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진다. 현실에서 기여과실을 채택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여과실은 이론의 설명을 위해서만 채택하고 추후는 논의하지 않는다.[10]

10) 미국에서 6개주만 채택하고 있다.

〈표 2〉 消費者의 情報 및 事故確率變化

	엄격책임	과실책임
소비자의 완전정보	효율적	효율적
소비자의 불완전정보	효율적	비효율적
소비자의 불완전정보 및 사고확률변화	비효율적	비효율적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는 부주의할 경우 자신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손실을 과소평가하면 주의를 덜 기울일 것이므로 자신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또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행동이 예상피해액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평가할 때(不完全情報)는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나 과실책임 모두 위험의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4) 保險(소비자가 危險回避를 선호할 때)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危險中立的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제 소비자가 危險回避的(risk-averse)이라 가정해 보자. 먼저 保險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 소비자가 위험회피적이고 제조자가 위험중립적이라면 제조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엄격책임이 이상적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만 과실책임이 이상적이다. 즉 제도선택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위험회피 정도를 비교해야 하며 만약 소비자가 제조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심하면 기업의 책임이 높아져야 효율적이다.

이상적인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배분의 차원에서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은 모두 효율적이다.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자는 책임보험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가 상해보험으로 완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이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의 문제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보상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엄격책임하에서 제조자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바, 이는 제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데 비해 책임보험이 완전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소비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해보험료가 제품구입량에 비례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가 소비자가 구입하는 음료수의 양과 무관하게 정해진다면 소비자는 너무 많은 음료수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과다한 양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 완전한 보호보다는 적은 혜택을 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둘 다 불완전하다면, 위험배분에 있어서 엄격책임과 과실책임간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제조자와 생산자간의 상대적인 위험회피에 달려 있다. 여기서도 소비자가 제조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심할수록 기업의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

(5) 第3者 被害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가정하였다. 샴페인 병을 땄을 때 코르크마개가 날아가 다른 사람의 눈에 맞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소비자가 아닌 제3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엄격책임이 과실책임보다 우월하다. 엄격책임이라면 제조자 책임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사고보상의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가격이 시장가격이 된다. 과실책임에 있어서, 제조자는 책임이 없어 시장가격은 전체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 또한 자신이 겪지 않을 사고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시장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위험제품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많이 매매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의 목적은

여러가지 상호배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규칙을 찾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나 과실책임 모두 제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주의와 적정한 생산량을 유도한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면, (소비자가 알맞은 주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만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라 주의조차 소홀히 한다면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조차 비효율적이 된다.

위의 결론에 위험회피정도까지 고려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제조물 책임의 모든 요소(제조자의 주의, 소비자의 주의, 산업생산량, 위험분산)가 고려될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한 규칙이 모든 면에서 최선일 수는 없다. 어떤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각각의 특정한 제조물책임의 상황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6) 기타 研究

Yandle(1974)은 소비자를 세그룹(보험을 이용하는 그룹, 자체보험을 만드는 그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규칙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어떤 한 책임원칙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적제도나 정치적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urrows(1982)는 과거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와 제조자들의 행동이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었다. Coase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이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구성원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과실책임

은 물론 엄격책임조차 비효율적임을 보였다.

책임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사고비용을 소비자 대신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위험제품의 판매를 억제시키고 따라서 사고의 정도와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Oi(1973)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달리 보통 가능한 조건하에서, 제조자책임으로의 전환은 위험한 제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의 결과는 몇가지 가정에 기인하는데 첫째, 소비자와 제조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제품위험이 어떤 행동에 의해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셋째 소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등이다.

Brown(1973)은 각각의 책임법칙이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과실책임, 공헌적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 공헌적과실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등의 책임규칙을 살펴보고 모든 책임규범이 각 구성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rown(1974)은 제조자와 소비자에게 보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때, 법으로 위험을 분배할 때의 세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는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동이 위험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한 책임규칙이 항상 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다른 몇몇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바꾸거나 완화하면서 책임의 모델을 분석하였다. Green(1976)은 각각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수준의 주요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를 가정한다. 그는 책임규범의 효율성은 각 개인그룹에서 비용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였다. 만약 피해자마다 사고예방의 비용이 다르다면, 사고방지비용이 높은 피해자는 낮은 수준의 주의를 하고, 방지비용이 낮은 피해자

는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다양한 비용수준에 있는 데 반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예방비용이 든다면 이 결과가 효율적일 것이다.

Ordover(1979)는 주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하고 공급자가 이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가정하에서 엄격책임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아 Oi(1973)의 결과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엄격책임은 낮은 위험도의 소비자들이 높은 위험도의 소비자들을 경제적으로 보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엄격책임과 과실책임간의 우월성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Shavell(1980)은 소비자의 행동이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와 미치지 못할 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이 각각 효율적인 경우를 설명한다. 과실책임에선 피해자가 행동의 모든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을 하고,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과다한 구입을 하려는 반면에 가해자는 행동의 전체비용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생산한다.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수학적 모형은 부록에서 다룬다.

Ⅲ. 先進國의 製造物責任法

1. 주요 이슈

다음의 여섯가지 사항들이 제조물책임법의 작동과 기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서, OECD 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제 도입·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다.

가. 製品使用者의 責任

이는 책임의 결정에 있어 제품사용자의 과실이나 위험의 감수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모든 OECD 국가들은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순수한' 비교과실책임원칙은 피해자가 사고에 대하여 40%의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을 40%만큼 삭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경우 6개주만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한 배상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43개주가 비교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일정 임계수준을 넘지 않는 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수정된' 비교과실책임원칙을 쓰고 있다.

나. 連帶 및 個別責任

이는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 누구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연대 및 개별책임의 원칙이 채택되면 일단 각 피고의 책임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정된 비율로 한정되나(개별책임) 다른 피고들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선택한 피고가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연대책임)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서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촉진되나 배상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피고가 그 과실비율 이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도 자신이 취급한 물품의 결함에 대해 100%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대책임의 적용방식과 범위는 州에 따라 다르며, 9개주는 1987년 이후 연대책임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스웨덴의 제조물책임법은 주요책임자(제조업자, 자기 상표로 제품을 판매한 자,

수입업자)와 부속책임자(판매업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판매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이전단계의 사업자를 알려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開發危險抗辯(기존기술항변)

이는 제조자가 제품의 생산·판매시점에서 제품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개발위험항변은 '숨겨진 위험'의 경우 및 생산 또는 판매 이후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지식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이 판매될 시점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중에 환자의 복용후에 발견되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EC 지침은 제품의 판매시점에서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의 상태가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각 회원국이 이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EC 국가들이 이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기술혁신의 위축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개발위험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법원이 이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

라. 提訴期限

이는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제소기한이 없는 경우 제조자는 무한의 책임기간에 직면하게 되어 책임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소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EC 지침은 10년의 제소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8개주가 5년에서 12년에 이르는 제소기한을 두고 있다.

마. 損害賠償

손해배상의 금액과 유형, 손해배상한도의 설정 여부, 副補償源原則(collateral source rule)의 채택 여부 등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의 수준 및 기업의 책임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손해배상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으로 나눌 수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의 주목적은 원고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은 소득손실과 의료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EC 지침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고 있다. 최근 일부 미국법원들은 생의 즐거움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쾌락적 손해배상이라는 새로운 비경제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고를 처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많은 법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엄격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수와 배상금액이 급증하였다.

EC 지침은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각 회원국에게 7천만ECU(약 650억원)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만이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은 설정하지 않았다. 미국에는 손해배상액 규모를 제한하는 연방법률은 없으며, 13개주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미 6개주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제한설정은 줄어들 것이다.

副補償源 원칙은 손해배상액이 의료보험이나 산업보상보험 등의 부차적 보상원에 의해 감소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42개주)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는 의료보험의 보상액뿐 아니라 제조자의 배상도 받기 때문에 이중배상이 된다.

바. 製造物의 範圍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택의 부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자체는 제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고, 단지 미국에서만 대량으로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중고품, 전기, 가스는 제조물에 해당하나 혈액, 臟器, 동물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C 지침은 1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EC 국가는 이들을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2. 美國의 經驗

1960년 뉴저지주 대법원의 Henningsen 판결과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Greenman 판결에서 엄격책임이론이 채택되고 1964년에 American Law Institute가 엄격책임원칙의 수용을 권고한 이래, 많은 州들이 엄격책임원칙으로 전환하였다. 후속 판결들을 통해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의 개념이 확대되어 그 입증이 용이해지고 제조자의 항변도 크게 제한됨으로써, 1970년대부터 경고결함 관련 쟁송이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업들이 배상책임의 폭증을 겪었다.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연방 제조물책임소송이 1975~89년 사이에 2,393건에서 13,408건으로 6배 증가하였고, 민사사건에서 제조

물책임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5.74%로 증가하였다. 1975년에 9건에 불과하던 100만달러 이상의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판결이 1984년에는 86건에 달하는 등 배상판결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책임보험료의 급상승, 고위험 업종의 보험인수 거부 등의 '책임보험위기'가 발생하여 항공기, 스포츠용품, 제약, 자동차, 화학산업 등이 크게 영향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1985년에 기업책임 관련 소송의 비용으로 700억달러(56조원)가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업 자문회사인 Tillinghast의 1989년 연구에 의하면 1987년도 총책임비용 지출액이 1,179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표 3〉 EU 會員國 및 日本의 施行 및 옵션採擇 現況

국 명	입 법 현 황 (시 행 일)	옵션		
		1차농산물/수렵물	개발위험항변	책임한도액
영 국	1988년 3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그 리 스	1988년 7월30일	배제	인정	존재
이 탈 리 아	1988년 6월29일	배제	인정	부재
룩셈부르크	1989년 5월 2일	포함	부정	부재
덴 마 크	1989년 6월10일	배제	인정	부재
포 르 투 갈	1989년11월21일	배제	인정	존재
독 일	1990년 1월 1일	배제	인정	존재
네 덜 란 드	1990년11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벨 기 에	1991년 4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아 일 랜 드	1991년12월16일	배제	인정	부재
프 랑 스	불명	포함	인정	부재
스 페 인	1994년 7월 8일	배제	인정	존재
오스트리아	1988년 7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핀 란 드	1991년 9월 1일	포함	부정	부재
스 웨 덴	1993년 1월 1일	포함	인정	부재
일 본	1995년 7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많고 손해배상액이 높은 것은 배심원제, 비경제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성공보수제 및 광고, 재판전 증거조사권,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의 발견' 등과 같은 미국 사법제도의 특성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배심원에 의한 책임의 결정 및 비경제적·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배상액에 많은 편차를 가져오면서 결함과 책임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제조물책임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다.

최근에는 제조물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법의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의 범위와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경제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한도의 설정과 절차적 제한, 연대 및 개별책임 원칙의 개정 또는 폐지, 부보상원 원칙의 철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3. 日本 및 유럽의 經驗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제조물책임소송이 1건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불편한 소송체계와 소송을 꺼리는 문화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국민생활센터 및 민간부문의 11개 산업별 PL센터가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소비자들은 이들 기관을 제일 먼저 이용하여 제조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를 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경험이 1년에 불과하여 아직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산업에 미친 영향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법의 유럽통일안(EC지침)을

채택하여 역내 법적용의 통일성을 모색하였는데, 논란의 대상이 된 1차농산물과 수렵물의 포함, 개발위험항변의 인정, 책임한도액의 설정 여부 등은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중 대다수 국가들은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개발위험항변을 인정하였으며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았다(표 3 참조).

Ⅳ. 製造物責任法의 經濟的 效果 및 費用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통한 엄격책임원칙으로의 전환은 제조자, 소비자, 보험회사, 법조인 등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경제활동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와 내용, 사법제도, 법률서비스시장의 작동 등 많은 요소들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손해배상, 안전과 기술개발, 물가, 국제경쟁력 및 중소기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살펴본다.

1. 損害賠償

결함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과 배상수준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원칙과 내용 및 제조물책임법제 이용의 비용에 달려 있다. 사법절차의 이용비용이 일정하다면 엄격책임으로의 전환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가망성을 높일 것이다. 과실책임하에서는 피고가 제품의 결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이 부과되나, 엄격책임원칙하에서는 피고가 취한 행위(주의의 수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불법행위법이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원고의 승소확률이 20%에서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Viscusi(1986)의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엄격책임원칙의 채택은 원고의 승소 가망성을 20% 높인다고 한다. 원고승소확률의 증가는 쟁송 이전 단계의 결정(소송제기, 화해, 소취하 등)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제조물책임법이 인정하는 손해의 유형, 부보상원 원칙의 채택 여부, 배상액에 대한 제한의 여부 등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절차의 이용비용이 높고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이 과도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2. 安全과 革新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생산·소비를 억제하고 안전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잘못 운용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비용의 부과는 제조자의 안전제고노력과 주의조치를 강화시킬 것이나, 이것이 소비자의 사고방지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사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FDA가 안전 병마개 사용을 의무화한 뒤 부모들의 주의수준이 낮아져 오히려 어린이가 약을 삼키는 사고가 증가한 예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혁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onfer-

ence Board(198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물책임사건을 경험한 기업들 가운데 47%가 제품사용법과 경고문을 개선하였고, 35%는 제품의 안전도를 높였으며, 33%는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조사대상기업의 36%가 과다한 책임비용 때문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였고, 30%는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1%는 제품연구를 중단하였다. Priest(1990)와 Swazey(1991) 등의 연구결과는 책임의 확대가 안전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억제하여 그 비용/편익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반면, Graham(1991)과 Craig(1991)는 제조물책임소송이 관련제품의 안전과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안전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산업부문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안전과 혁신을 모두 증진시켰으나 민간항공기, 자동차, 제약,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혁신을 위축시키고 안전도 저해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럽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안전이 향상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기업이 법제정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제조물책임비용의 증가는 제품안전의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노력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에 수반하는 위험을 제거 또는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제도의 예측불가능한 성격과 과도한 책임비용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는 Conference Board의 조사결과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과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Viscusi & Moore(1991)의 실증분석은 제조물책임비용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는 책임비용의 증가가 안전제고유인을 창출·강화하지만 기대책임비용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연구개발을 저해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비용의 표본평균에서 제조물책임비용은 연구개발강도를 15% 높이며, 제조물책임법제가 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책임비용의 임계치는 매출액의 1%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비용이 극히 미미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제조물책임의 확대가 기업의 안전제고유인을 강화하여 연구개발노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소송절차, 법률서비스시장 등이 영미법계통의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준까지 기업의 책임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하겠으나, 제조물책임법이 기존제품보다 신제품에 대하여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기존기술항변 및 소비자의 위험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제품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등의 제조물책임비용이 높아지고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의 가능성에 노출되는바, 이는 신제품의 개발·도입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3. 物 價

일본 경제기획청의 의회보고에 따르면, 일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할 당시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모두 1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가 0.005% 정도 상승하리란 분석이 있으며, 다른 방법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물가가 0.01% 정도 상승하리란 예측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직접적인 손해배상비용 이외에 기업의 사고예방노력, 연구개발, 소송비용, 생산성, 국제경쟁력, 보험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인 분석 없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제품 10가지 중 가장 위험한 2가지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으로 해서 사라졌다면 평균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평균안전도도 상승하므로 단순한 물가상승과는 달리 품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보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위해 및 위험이 산업성격상 내재된 부문에서 가격상승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계, 전기기기, 운송용기기(자동차부품 등), 건설업(부품 및 설치 포함), 고무와 플라스틱, 비철금속, 정밀기기, 화학, 화장품, 가스제품, 운동용구, 완구, 의약품(한약 포함), 가구, 식료품, 의류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 國際競爭力 및 中小企業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 평가의 변화를 수반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979년에 베트남에서 화학무기로 쓰였던 Agent Orange의 후유증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날

생산기업 6개사의 주식가치가 5,600만달러(448억원) 하락하고 그 후 열흘간 9,800만달러(784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지자, 주식가치는 1억4,500만달러(1,160억원)이 상승하였고 그중 Dow Chemical은 8,300만달러(664억원)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험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비용의 부과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자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20~50배나 많은 제조물책임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자동차가격 중 제조물책임비용은 500달러인 데 반해 수입차는 50달러에 불과하며 대만에서 12달러에 불과한 간염백신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비용으로 160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매년 300만명의 어린이에게 주사되던 DTP의 가격은 최근까지 10센트였으나 제조물책임의 증가로 2달러80센트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번의 배상판결이 제품의 연간 매출액 90만달러를 쉽게 넘기 때문이다. 1987년도에 Dow Chemical은 총매출의 절반을 해외판매에서 확보하였는데, 외국에서는 4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을 겪은 반면에 미국내에서는 456건을 겪었다. Campbell의 보고서는 기업책임의 경감이 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을 증진시킴을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어 제조물책임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도 소송제도상 과다하게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수출품의 55%가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정립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으로 안정성이 향상된다면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및 시행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위험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안전책임의 증가로 하청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하청기업에 대한 검품 및 업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지며 부품에서 결함 발견시 벌금부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기업의 필요한 대응조치는 ① 제품안전관리자의 선임 ② 제품안전을 위한 조직신설 ③ 사고발생후 대책체제 ④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파악 ⑤ 사내 기록보존체제 정비 ⑥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⑦ 제조과정 품질관리 ⑧ 경고문구와 취급설명서 검토 ⑨ 판매후 감시와 경고의 실시 ⑩ 배상청구체제와 리콜체제 확립 ⑪ 하청기업까지 보험대상으로 하였는지 점검 ⑫ 비용부담과 책임비율 정립 등이다. 특히 하청기업에게 일어날 예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구도 필요한데 이는 ① 품질관리체제의 정비 ② 손해발생시 책임분담의 명확화 ③ 품질보증의 강화 및 명확화 ④ 보험 가입 ⑤ 안전성에 관한 서류보존 ⑥ 경고표시의 의무이행 및 적정화 ⑦ 수주내용의 명확화 ⑧ 애프터서비스체제의 정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완성품의 사고원인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을 때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대금지급의 지연, 금액의 삭감 등 대금에 관한 사항만 규제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으로 하청기업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부담, 검사기준변경 등으로 인한 제품수령거부, 보험 가입 강요 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의 확대해석 또는 조건추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하청기업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 납품제품 자체의 하자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성 강화로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시

장에서 탈락되어 독과점률 증가 및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안전의 품질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감소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증진효과와 독과점폐해를 사안에 따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품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 행위(광고, 보도)를 촉진하는 정책이 안전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품질관리 및 상품명(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의 신뢰구매를 유도하는 시장행위이므로 낭비적 요소로만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영향은 하청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은 사고발생시 책임부담 이상의 여론의 주목과 인지도 악화를 겪어 피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대기업의 제품은 중소기업에 비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며 따라서 안전에 더 주의할 유인이 존재한다. 간장의 위해성 논란, 광우병사건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위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높아 부정확한 정보는 기업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규명의 정확성이 요청된다.

5. 生産物賠償責任保險

1967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위험과 시공위험을 담보하고 생산물자체의 손해, 리콜비용 등은 담보하지 않으며, 제조자는 판매인이나 하청기업을 피보험자로 추가할 수 있다. 엄격책임의 과다적용이 위험예측의 불가능과 부담의 과다를 초래하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회피하여 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보험계약 회피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동차부품생산의 회피는 교통의 혼란을 초래하게

〈표 4〉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年度別 契約實績

(단위 : 천원)

	국 내		해 외		합 계	
	건 수	보험료	건 수	보험료	건 수	보험료
1990	461	961,357	148	1,582,475	609	2,543,833
1991	620	1,539,302	160	1,994,924	780	3,534,226
1992	707	1,690,282	144	2,010,589	851	3,700,871
1993	922	2,084,779	156	2,664,081	1,078	4,748,861
1994	988	4,627,152	159	4,724,763	1,147	9,351,915

되며, 그밖에 신제품개발의욕의 저하, 실업 및 생산자본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1994년의 우리나라 전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계약건수는 1,147건, 보험료는 93억5,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0%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내용 제품의 보험료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50%에 이르고 있다(표 4 참조).

1994년에 국내용 제품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는 988건, 보험료 총액은 46억3천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로 아직 미미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르러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소수제품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의 미성숙을 알 수 있는데, 전기제품, 곤돌라, 가스용품, 음식물, 보일러의 5대 종목이 전체 보험료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자동차부품, 난로,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파이프의 비중이 크다(표 5 참조). 보험금을 지급한 실제사건 중에서 국내에서 1억7,900만원을 지급한 보일러제조회사가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이며 수출품의 경우

〈표 5〉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원수실적(1994)

(단위 : 천원, %)

항 목	건 수	보 험 료	보 험 금[1)]	보험료비중
1. 전기제품	159	2,947,037	928,437	31.51
2. 기 계 류	62	980,908	132,000	10.49
3. 곤 돌 라	107	898,166	824,728	9.60
4. 가스용품	50	506,184	366,360	5.41
5. 자동차부품	92	420,077	106,114	4.49
6. 음 식 물	247	333,896	94,158	3.57
7. 보 일 러	41	211,260	152,236	2.26
8. 난 로	27	144,752	168,973	1.55
9. 의 류	22	81,264	0	0.87
10. 의 약 품	26	78,742	0	0.84
11. 화학제품	22	74,136	0	0.79
12. 파 이 프	15	30,058	15,618	0.32
13. 기 타	277	2,645,430	1,983,618	28.29
합 계	1,147	9,351,915	4,772,247	100.00

註 : 1) 미지급 보험금 포함.

에는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한 와이어로프회사가 있다.

거의 모든 국내 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1993~94년)에 전기제품, 가스용품, 보일러 등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해외수출용품은 변동폭이 워낙 커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전기제품, 기계류, 의약품의 총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출하액대비 보험료 부담률을 알아보고자 했으나 기업별로 그 위험도 및 가입금액에 따라 변동폭이 워낙 크고 0.01%부터 1.5%까지 범위가 워낙 넓어 일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없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확대할 것은 명확하지만 보험료를 상승시킬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업책임 확대 및 안전의식 강화는 상대적으로 低危險度의 사업자의 보험가입

을 유도하고 종전의 逆選別現象을 교정하여 오히려 보험요율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엄격책임의 강화가 보험료지급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산업별 협회를 통한 단체계약으로 중소기업의 보험요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다.

V. 製造物責任法 制定에 관한 提案

1.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必要性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제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만큼 제품의 사용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용은 증가하게 되나 피해 소비자가 현행 민법의 과실책임이 요구하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결함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실제로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품관련 事故의 頻度나 被害規模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기업이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의 범위와 책임비용이 얼마나 적은지는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업들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로써 잘 알 수 있다. 기업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위험제품들이 생산·소비되고 있어 제품결함에 기인하는 신체적·물적 피해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피해 소비자들은 전체적

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현행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과실책임을 엄격책임원칙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물책임법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증진시키며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높여 책임부담에 근접시키고 제품의 국제경쟁력도 상승시키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만약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안전증진에 의한 사고감소에 의해 상당부문 상쇄되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전체적인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리라 생각되므로 제도는 도입하고,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대한 반론으로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조물책임소송과 엄청난 배상판결액이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책임비용이 과다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배심원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책임을 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도 매우 적고(1인당 변호사수가 미국의 1/23) 성공보수제와 변호사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대립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판전 증거조사권을 허용하고 있어 변호사의 활동과 능력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우리는 대립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된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조사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증인의 활용범위도 좁아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작다.

많은 선진국들이 미국의 엄격책임제도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바꾸어 왔지만, 소송 및 책임비용의 폭증을 겪은 나라는 없다. 1985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불법행위소송의 총비용은

약 7억700만달러인 반면에 미국의 비용은 290억~36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두 나라간의 인구의 차이를 조정하면 미국이 영국보다 불법행위소송에 10배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제조물책임의 비용이 실체법상의 차이보다는 일국의 전반적인 법적 및 사회적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조차도, 책임비용이 급증한 시점이 엄격책임이 도입된 1960년대가 아니라 1970~80년대였다는 것은 엄격책임의 채택이 책임비용증가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Viscusi(1991)는 책임비용증가의 요인으로서 추정조항과 결합된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의 광범위한 인정을 들고 있다.

2.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方向

무엇보다도 책임비용과 제품결함(위험)이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여 사고억제의 유인과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단지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도록 기업에게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제조결함에 대해서는 결함판단이 용이하므로 엄격책임의 철저한 적용으로 기업의 보상보험기능을 강화하되,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에 대해서는 위험/효용의 평가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11] 제조물책임법과 정부의 안전규제간의 합리적 기능배분을 통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총체적인 위험관리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11) 디자인결함은 제품디자인 개선의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는데도 디자인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으로 정의되고, 경고결함은 경고가 있었으면 사고가 방지되었을 경우에 경고의 부재를 결함으로 정의한다.

가. 抗 辯

기존기술항변을 인정하여 기업이 제품의 생산·판매시점에서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숨겨진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적절한 사고억제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디자인결함과 마찬가지로 경고결함의 인정도 위험/효용의 비교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제품위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고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고결함에 대한 책임부과의 논거이다. 그러나 경고결함이 객관적·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지 않는다면, 위해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사고억제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채 기업들의 책임비용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에게 제품경고의 확대유인을 제공하여 정보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이는 경고의 실효성을 낮추어 오히려 제품의 전체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안전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설정한 품질·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기준의 위반을 디자인결함의 증거로 채택하고, 기준충족시에는 결함이 없다고 추정하되 원고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규제가 구체적으로 경고용어들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명시적 경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예: 의약품, 주류, 담배 등)에는 규제의 준수를 항변으로 인정하여 법원이 전면적인 위험/효용(risk/ben-

efit)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을 경감하고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 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품표시를 승인할 뿐 표준화된 구체적 경고용어와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고표시의 내용과 방식이 제품에 따라 다른 경우나 경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경고의 형태와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결함의 결정에 있어 규제의 준수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항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損害賠償의 上限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액과 위험수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완전한 보상을 지향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EC 지침은 손해배상상한의 설정 여부를 개별 국가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자료지급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실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배상판결액의 과다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손해배상한도의 설정은 두뇌손상, 마비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보상기능 및 보상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비용과 위험수준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사고억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副補償源 原則은 소비자에게 이중의 피해보상을 하여 사고방지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게 되는 의료보험이나 산재보상보험의 혜택만큼 결함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의 책임비용이 낮아져 기업의 안전제고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는 위험분산이란 효과가 있기는 하나 각 기업의 위험감소노력에 대해 올바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자율적인 시장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강제보험은 동일 산업군에 단일화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자율시장은 사고다발 기업 및 제품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므로 더욱 효율적이다. 강제보험이나 無過失保險은 사고방지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지 못하므로 경제학적인 정당성이 없다.

라. 連帶 및 個別責任

연대 및 개별책임 원칙의 채택은 결함과 배상책임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연대책임은 지불능력이 우월한 대기업에게 불리하지만 제조기업 외에 유통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제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유인을 제공하며, 현재 지불능력을 갖춘 기업이 일단 피해액을 배상한 후 공동책임자간에 책임비율에 따라 추후 상호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억제의 공동유인도 상존한다.

마. 提訴期限 및 製品의 範圍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10년의 제소기한이 무난할 것이다. 제조물은 일반제조물 외에 전기와 가스, 부동산의 부품을 포함하고 중고품, 혈액, 臟器, 未加工 농산물 및 수렵물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연혁적으로 대량생산의 결과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임을 고려한다면, 그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되는 제품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대량으로 건설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자체에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건설업체의 과실은 명백해지고, 이에 대하여서는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은 건축에 필요한 부품의 구성체이므로 부품 중 어느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건물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부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시기와 사고발생은 오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건축시 발생한 것인지 관리소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12]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하여 강력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 효용의 극미한 증가를 위한 과다한 자원의 사용에 다름아니며, 특히 다른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도 부동산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소비자보호를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

12) 우리나라에서는 대량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고발생시 민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일일이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거래비용·측정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原下都給者에게 책임배분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 缺陷의 存在 및 因果關係의 推定

원고가 제품의 생산기술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여 제품결함 및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推定規定을 둠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질 것이나, 제조자가 자기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는 제조물책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인과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정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과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위험통제의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매우 불완전한 사회보험의 기능만을 수행할 것이다.

판단이 쉬운 제조결함의 증명을 위해서는 추정조항이 필요치 않다.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은 그 입증 및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정조항과 결합되었을 때 제조업체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부담이 폭증하였던 원인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 특히 경고결함과 결함의 추정이 함께 인정되면 제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두 경고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비하여 제조물의 안내서에 모든 사고발생 가능상황에 대비한 경고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경고 및 디자인결함은 그 위험과 효용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극히 어려우며, 이 때문에 개발위험항변을 통해 실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현대의 제조물책임 정

신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법원에서는 결함의 추정 대신 피해자 측의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결함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유보시키되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에 대한 판단이 명확지 않을 때 이를 추정원칙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판단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안전규정 및 규제가 소비자의 안전 및 기업의 안전제고 유인제공을 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를 제조자에게 책임지우게 되는 추정조항은 결함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사고억제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과 동떨어지게 되므로 추정조항은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사. 立法時期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한명 또는 법률이 정한 단체가 대표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각 소비자에게는 소액이지만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사건의 배상추구유인이 창조되고 제조물책임법이 보완·강화될 것이다. 소비자보호 증진을 위하여 집단소송법과 리콜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조만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입법후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關聯機關 및 制度의 整備

가. 危害情報蒐集 및 原因糾明센터

각 기관별 위해정보 수집활동이 미약하고 정보의 분석·평가기

〈표 6〉 우리나라의 危害情報制度

구 분	주관부처
식중독신고제도	보건사회부
의약품부작용신고제도	보건사회부
가스사고신고제도	상공자원부
화재발생신고제도	내무부
생활용품 위해·위험정보제도	공업진흥청
소비자위해정보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능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전체의 위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표 6 참조). 식중독과 의약품부작용신고제도는 보건사회부, 소비자위해정보는 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인진단에 협조가 되지 않아 사고방지 및 대책마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제조자의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에 기인한 것인지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판명되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서 제조물책임의 사고억제기능 수행이 용이해지므로, 이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망라하여 객관적인 원인규명센터를 전국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나. 業界 및 政府의 安全規制整備

제조물책임법은 사후적인 배상을 통한 간접적인 사고억제 유인책이므로 개개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미약하여 청구유인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막대해서 가해자의 배상능력 부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이 감시·통제의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효과 및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채택되었으나 모든 규제는 비용/효과분석에 의거한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FDA는 엄격한 신약검증으로 신뢰받지만 과다한 사전검사규제로 신약당 2,000만달러(160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며, 외국에서는 이미 소개된 신약이 FDA인증을 위해 수년을 소모함으로써 신약개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FDA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약검증체계의 비용/효과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생명에 대한 비용추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다. 裁判外 紛爭處理機構

법률서비스 이용 편이성이 낮은 일본에서는 재판외 분쟁처리기구가 발달하였다. 기관의 중재가 소송보다 빠르고 低費用이며 少金額의 청구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정에서 보장되는 제소 및 변호과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청구의 용이성으로 청구건수가 늘어나 전체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는 11개의 제품별 PL(Product Liability) 센터가 있어 소비자와 제조자간의 중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일반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한 SG마크(Safety Goods), 주택부품에 대한 BL마크(Better Living), 폭죽에 대한 SF마크(Safety Fireworks), 완구에 대한 ST마크(Safey Toy) 등의 안전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사고발생시 배상이행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법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이용 편이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단기적인 보조체계로서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는 활용이 가능하나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듯하다.

뉴질랜드의 무과실보상체계처럼 사고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배상 시스템도 한가지 대안이긴 하지만 사고책임소재와 배상의무의 無聯關으로 사고억제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라. 리콜(Recall)制度

사전규제의 하나인 리콜제도는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회수·수리·교환하는 제도로서, 제조물책임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후에 배상을 원활히 해주는 제도이지만 리콜제도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리콜제도는 제품가치가 높은 경우(예: 자동차)에는 회수율이 높지만, 제품의 가치가 회수비용보다 낮은 경우(예: 장난감)에는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에서도 소비제품의 평균회수율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부적절한 리콜은 남아 있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축소시켜 반대로 위험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리콜제도가 사고방지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 회수·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크다는 비난이 있다. 美 소비제품안전협회의 48건의 리콜로 인한 관련기업 株價의 평균하락폭은 6.9%, 절대손실액은 70억달러로 나타났으며, FDA의 의약품 리콜은 株價의 6% 손실을 초래하고 NHTSA에 의한 자동차 리콜은 1.4%의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리콜비용은 제품가격상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수행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사고 발생후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리콜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리콜을 활성화하므로 소비자안전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Ⅵ. 結　　論

제조자가 소비자보다 제품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제품의 성질을 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엄격책임원칙이 과실책임보다 사고억제·감소에 있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엄격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는 결함제품이 초래하는 사고의 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 위험제품의 생산·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세계경제통합에 대응하여 기업책임법제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安全提高誘因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사전적 안전규제는 기업이 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추가적인 안전투자의 유인을 갖기 어려우나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안전의 향상에 노력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의 소비자와 대등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OECD에의 가입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의 충분한 홍보 및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康昌景·崔秉祿·朴熙主,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宋泰會, 「제조물책임원칙의 법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製造物責任의 立法化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제2주제,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4년 7월, pp. 49~76.

申光湜·具本天, 「美國·日本의 製造物 責任法 및 企業責任法制의 施行現況 調査」, KDI出張報告 96-01, 韓國開發研究院, 1996. 7.

———, 『製造物 責任法 導入의 經濟的 效果分析』, 消費者保護院 研究用役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96. 6.

梁峻模, 「製造物責任法 導入을 위한 政策方向」, 『產業研究』, 제2집 제1호, 1996.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5.

崔秉祿, 「제조물책임법 시안」,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제2주제, 1996.

韓國消費者保護院, 『消費者危害實態 및 安全意識調查』, 1993. 3/1994. 3/1995. 3.

日本 經濟企劃廳, 「製造物責任制度導入の影響: 歐洲調查報告」,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 第1科, 1993. 5.

濱本哲治, 『新PL法のしくみと對策』, 日本實業出版社, 1994.

Brown, John P.,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Journal of Legal Studies,* 1973.

———, "Product Liability: The Case of an Asset with Random Lif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No. 1, 1974, pp. 149~161.

Burrows, Paul, "Idealised Negligence, Strict Liability and De-

terrenc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 1982, pp. 165~172.

Conference Board, *Product Liability: The Corporate Response,* Report #893, New York: The Conference Board, 1987.

Craig, Andrew,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in General Aviation,"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12,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Graham, John D., "Product Liability and Motor Vehicle Safety,"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4,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Green, Jerry, "On the Optimal Structure of Liability Laws," *Bell Journal of Economics,* 553, 1976.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Oi, W.Y., "The Economics of Product Safety,"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4, Spring 1973.

———, "The Economics of Product Safety: A Rejoinder,"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5, Autumn 1974, pp. 689~695.

Ordover, Janusz A., "Products Liability in Markets with Heterogeneous Consumer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No. 8, June 1979, pp. 505~525.

Polinsky, A. M.,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Priest, G. L., "The Modern Expansion of Tort Liability: Its Source, Its Effect, and Its Reform," *Journal of Econ-*

omic Perspective, 1990.

Shapiro, Carl, "Symposium on the Economics of Lia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3, Summer 1991, pp. 3~10.

Shavell, Steven,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9, 1980, pp. 1~25.

———, "On Liability and Insurance," *Bell Journal of Economics,* 120, 1982.

Swazey, Judith P., "Prescription Drug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8,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Viscusi, W.K., "The Determinants of the Disposition of Product Liability Claims and Compensation for Bodily Injury," *Journal of Legal Studies,* 15(2), 1986, pp. 321~346.

———, *Reforming Product Liabi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1991.

———and Michael J. Moore, "An Industrial Profile of the Links between Product Liability and Innovation,"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8,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Yandle, Bruce, "Products Liability, Risk, and Economic Efficiency,"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1, 1974, pp. 699~709.

論 評

金 一 仲

(崇實大學校)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의 확대에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소의 비용으로 제조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사고감소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소비자 주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OECD의 가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비자 제품의 질에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자들이 국내외시장에서 직면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동안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산발적인 논의들이 다분히 비경제적 논리 위에서 이루어져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1] 이 논문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에 기본을 두고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에 관해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오로지 경제논리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여러 곳에서 원숙하게 구사된 저자들의 논리 전개는 출간과 함께 정책입안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제조물책임의 학제간 논의를 크게 자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 예컨대, 현존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의 제1조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으로서 신속한 피해 구제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자들의 주장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efficient management of risks)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구성상 논리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본목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전제한 후, 저자들은 Ⅳ장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특정 제도의 도입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들을 개관하는 논문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모든 부문의 효과를 나열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 경제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체의 맥을 희석시키는 식의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요컨대, Ⅴ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으나) 설사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전체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정책입안가를 포함한 관련 이익집단들이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논의를 좀더 중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끌자는 저자들의 의도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논문임에 틀림없으나 저자들의 모든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본고를 읽으면서 느낀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는 본고에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에서, 나머지는 후속 연구자들이 향후 비중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로서 이해되었으면 한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에서 채택될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의 기본원칙을 더욱 명확히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향후 입법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Ⅱ장에서 저자들은 엄격책임주의의 경제적 속성을 소개하고 있다. 사고비용의 내부화와 보험자 역할에 있어서 기업이 소비자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과실책임(negligence)보다 엄격책임이 우월하다는 논리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미국에서 주장된 바 있으며, 미국 제조물책임원리를 과실에서 엄격책임으로, 그리고 급기야 절

대책임(absolute liability)으로 이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이 갖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엄격책임하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Epstein, Priest, Schwartz 등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의 두가지 기본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첫번째 기본원칙으로서 공개적(open)이고 명백한(obvious) 결함은 책임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이 법정신에 깔린 의도는 제조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결함을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두지 말고 공개시키자는 데 있다. 제조자가 명백한 결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윤의 감소분보다 클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 쪽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므로 주의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상사용(normal use)의 조건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구매후 원래 의도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이 조건은 소비자측의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사고는 제조자 및 소비자의 주의의 무에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사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에게 최

2)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학계 및 법조계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몇가지 주장들로 인해 계약법의 쇠퇴는 물론 과도한 엄격책임이 도입되어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시작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보상 때문에 발생하는 제조자의 손실은 보험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 ② 위험을 배분함에 있어서 민간끼리의 계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③ 소비자 계층은 위험에 대해 무지하다. ④ 명성 때문에 기업이 제품안전을 제고시킨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⑤ 좋은 상품과 불량상품을 구별하는 법을 만드는 데 법관과 배심원은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3) 흥미롭게도 저자들은 V장 2절 가.에서 기존기술항변을 논하며 '숨겨진 위험(hidden risk)'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문헌에서 엄격책임을 논할 때의 숨겨진 위험이란 구매 당시 '소비자'가 몰랐던 위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따라서 기존기술항변에는 숨겨진 위험보다는 '알려지지 않은(unknown) 위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소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자는 의도이다.

둘째, 저자들은 Ⅱ장 2절의 책임원칙의 경제분석에서 과실책임·엄격책임·기여과실 등에 대한 경제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예로서 핵심 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이 좀더 명료하게 표현되었으면 독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본다. 저자들은 '소비자 정보불완전'이라는 조건과 '소비자 주의태만'이라는 두가지 조건하에서 각 책임원리의 경제효율성을 논하고 있다. 즉 전자에 해당하면 엄격책임이 효율적이고, 후자까지 해당하면 기여과실 항변인정의 엄격책임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대표적으로 첫째, 전자만 해당할 때 기여과실 항변인정의 엄격책임은 어떠한가, 둘째 저자들의 표현대로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 평가하는데 주의의무는 잘 지킬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등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본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이 일방적(unilateral)인가 아니면 쌍방적(bilateral)인가라는 구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라면 기여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만약 쌍방적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정보가 완전하다면 소위 미국 보통법 체계에서 논의되는 여섯가지 책임원리는 모두 경제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명제를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예컨대, 기여과실을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형평성만을 변화시킬 뿐 효율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4] 반면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책임원리가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다.[5]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쌍방주의 의

4) 같은 맥락에서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 역시 보험의 기능은 제고시키나 경제효율성에는 차이가 없다.

5)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 평가하는데 주의의무는 잘 지킬 때'라는 표현이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면 당연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할 것이다. 바꿔 표현하면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무, 불완전정보) 많은 학자들이 전술된 '두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엄격책임원칙'을 주로 하되, 보조적으로 '과실상계'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6]

본고에 대해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자들이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서 우리와 미국의 법절차 혹은 소송제도와의 차이를 판단근거로 삼는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거래비용이 높으므로 남소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송제도보다는 일단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자체에 우선적으로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들도 V장에서 뚜렷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미국의 소송제도보다는 추정조항, 디자인결함, 경고결함 등 때문이었다. 물론 소송제도의 차이점이 갖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논문을 읽는 정책입안가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한국소송제도상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섣불리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직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고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조물책임원리와 행정규제와의 연계성 또는 조합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반드시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V장에서 매우 간략히 언급되었기는 하나 저자들도 이 주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행정 규제와는 상당한 연계성이 존재한다. 이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센티브가 두가지 제도에 의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면 구태여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엄격책임원리만으로 효율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6) 전자는 불완전 정보를 극복하고 쌍방주의 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보험기능을 추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 요컨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두가지 수단을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정책입안가에게 관건으로 남는다. 만약 이 두 메커니즘의 연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다면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일대 혼란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이 분야 선도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안전기준 설정능력이 전반적으로 모자라므로 제조물책임법은 특히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에 초점을 두고 또 거기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또 최근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자인결함(design defect)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담당시켜 양립하는 두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험경고(hazard warning)의 차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전개된다. 디자인 결함에서처럼 최적 경고수준 및 경고 형태에 관해서는 법원보다 규제기관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크다. 물론 그 비교우위의 크기는 무엇보다도 제조자와 규제기관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양 및 연속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준수가 사고발생의 면책사유로 항상 인정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칙에는 어느 정도 가변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7]

제조물책임법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밖에도 해결

7) 먼저 특정 규제기관에서 엄격한 분석을 한 후 경고문 자체를 정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제를 준수한 제조자는 경고의무를 충족했다는 의미에서의 결함으로부터는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담배·식료첨가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준수가 면책사유까지도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직접 정해주기보다는 기준(standards) 또는 지침(guidelines)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 규제가 이런 형태의 예이다. 농약의 종류가 제품 및 기업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경고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면책사유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저자들에 의해서도 적절하게 언급된 배상의 범위, 분쟁조정체계의 확충, 보험제도의 정립, 외국 기준과의 조화 등 중요 과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무쪼록 저자들의 본 논문이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가속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金 仁 奎
(本院 硏究委員)

自律開放時代를 선언한 지 10여년이 훨씬 지났지만,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더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정책기조는 아직도 開發年代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모든 경제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에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소비자후생이 모든 경제행위의 궁극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자는 구호는 과거 개발연대에는 아마 타당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이러한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申光湜·具本天 박사의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 연구가 법제정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사고감소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나친 소비자보호는 생산자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단순한 소비자보호가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연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제Ⅲ장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은 OECD 국가들의 제조물책임

법제 도입·변경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주요 사안별로 잘 정리해 놓았다. 제Ⅳ장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역시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주요 사안별로 산뜻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본 논평자의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연구는 두 사람 이상의 공저자가 논문을 나누어 쓸 때 나타나기 쉬운 단원간의 연계성 문제가 발견된다. 둘째, 제Ⅱ장 "제조물책임의 논거와 경제분석"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의 하나인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문제를, 그것을 채택한 미국의 주나 나라가 극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단원간의 연계성 문제부터 지적하면, 제Ⅱ장과 제Ⅳ장은 제조물책임법의 경제분석 및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느낌을 준다. 그리고 제Ⅴ장 제1절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은 제Ⅰ장 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제Ⅴ장 제1절로 제Ⅰ장을 대체하는 것이 독자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제Ⅱ장 제2절 "책임원칙의 경제분석"을 설명함에 있어, 기여과실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의 책임원칙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면에서도 더 좋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이슈까지 자연스럽게 도입·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평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논거는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책임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법적 주의의무인 기여과실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받은 측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나타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책임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책임원리를 비교과실이라 하며,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1985년 *Journal of Legal Studies*에 실린 D. Haddock and C. Curren의 "An Economic Theory of Comparative Negligence"를 참조하기 바란다.